

논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논산시의회 의장



2022년 1월 13일

논산시의회규칙 제6호

논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

논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2제1항 후단 중 “지방자치법”을 “법”으로 한다.

제19조제1항 단서 중 “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”을 “의원은 3명 이상”으로 한다.

제4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“제1항 또는 제2항”을 “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.

-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(또는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)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. 다만, 법 제7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.

제46조의 제목 “(투표절차)”를 “(투표용지에 의한 투표절차)”로 한다.

제5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. 다만,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.

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7조의2(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심의) 의장은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·결정을 하거나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9조의2(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)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폐지) 논산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·폐 청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.

②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.

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.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.

④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로 한다.

제46조(투표절차) ① ~ ④ (생략)

제52조(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)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. 그러나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·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.

<삭 제>

③ -----

----- 제1항-----
-----.

<삭 제>

제46조(투표용지에 의한 투표절차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52조(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)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. 다만,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.

② ~ ⑤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57조2(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심의) 의장은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·결정을 하거나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제59조의2(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)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